<2021 시대에듀 위생사 최종모의고사> 개정12판1쇄(발행일 : 2021년 8월 5일)

개정 법령 추록

※ 안녕하십니까, 시대고시기획입니다. <2021 시대에듀 위생사 최종모의고사> 개정12판1쇄 도서 출간 이후 개정된 법령 및 변경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<빨리보는 간단한 키워드>

페이지	수정 전(수정할 내용)	수정 후
p.13	**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(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)** •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질환	**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(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)** •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(화농성) 질환

<문제편>

페이지	수정 전(수정할 내용)	수정 후
p.45 92번	「식품위생법」상 건강진단이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은?	「식품위생법」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때 처하는 벌칙은?

<해설편>

페이지	수정 전(수정할 내용)	수정 후
p.22 정답표	92 ②	92 ①
p.29 87번 p.48 87번	**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(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)** •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질환	**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(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)** •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(화농성) 질환
p.29 92번	건강진단이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(법 제101조).	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·제조·가공·조리·저장·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(법 제101조).